



##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정성희 연구위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최근 빈번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추세임(그림 1, 2) 참조)<sup>1)</sup>

-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1.1%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함
  -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및 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평균 금액 12.2%) 증가함

〈그림 1〉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건수 추이



자료: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그림 2〉 의료사고 배상금액 추이



자료: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1) 정확한 의료사고 건수 및 분쟁을 파악할 수 있는 공인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및 피해 구제 통계를 참조함

■ 일부 의료사고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표 1) 참조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세균감염 패혈증 집단 사망(2017년),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2015년),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후 패혈증 사망(2014년) 등의 사고가 대표적임
-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공제<sup>2)</sup>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하 ‘의료배상책임보험’)<sup>3)</sup>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당 수 의료기관의 배상 자력 확보가 미흡함
  - 2017년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임
- 또한 의료기관의 배상 자력 부족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sup>4)</sup>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음
-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혜훈, 송영길 의원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함
  -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표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의안명                           | 제안 일자       | 주요 내용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br>(이혜훈 의원 등 10인) | 2018. 3. 2. | 제4조 신설: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 의사·한의학사의 성명, 학력, 전공분야, 면허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고, 장기간의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학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br>⑧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2)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해 운영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 제1항~제3항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된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피보험자인 의사 등이 의료업무 수행 중에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해 환자 등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임
- 4)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피해자(환자)가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에게 구상하도록 함

|                               |              |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br>(송영길 의원 등 10인) | 2018. 5. 21. | 제47조의2 신설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의 가입은 각 의료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
|-------------------------------|--------------|-----------------------------------------------------------------------------------------------------------------------------------------------------------------------------------------------------------------------------|

## ■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데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았음

-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 활동에 기인한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장애나 유·무형의 재산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전문 직업인은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행위로 손해를 입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민법 제 750조)하며, 또한 전문직업인과 의료인 간 전문적 업무 위임(위탁)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민법 제390조)함
  - 변호사, 공인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의 전문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표 2〉 참조)
- 전문 직업인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들에게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업인의 배상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표 2〉 국내 전문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현황

| 가입 대상        | 관련 법규              | 법령 내용                                                                                |
|--------------|--------------------|--------------------------------------------------------------------------------------|
| 변호사          | 변호사법(제58조의11, 12)  | 법무법인(유한)은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 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제19조, 제28조) | 법인회원의 경우 자체기금, 개인회원의 경우 5,000만 원의 보험 또는 공제                                           |
| 세무사          | 세무사법(제16조의2, 7)    |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세무사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보험 가입                                       |
|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제191조)        |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자산의 예탁 또는 보험가입 의무화                                                |
| 보험중개사        | 보험업법(제89조)         |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이상의 영업보증금 또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

-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자침 등을 통해 강제됨(〈표 3〉 참조)<sup>5)</sup>

-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인데, 소형병원은 10억 원 ~ 50억 원, 중형병원은 50억 원 ~ 100억 원, 대형병원은 200억 원 ~ 5,000억 원 등으로 가입하고 있음
-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가입하는데, 자기부담금 수준도 병원 규모에 비례하여 설정됨<sup>6)</sup>

〈표 3〉 주요국 의료배상책임 의무화 현황

| 구분    | 과실책임주의 적용 국가                                                                 |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국가 |
|-------|------------------------------------------------------------------------------|---------------|
| 의무보험  | 영국, 프랑스, 스페인,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미국(뉴욕,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등) |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
| 준의무보험 |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 뉴질랜드          |

자료: 차일권(2006) 참고 재작성

- 따라서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kiri](#)

5) 차일권(2016), “의료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 연구”, 보험개발원

6) Beazley Hospital Claims Study(2016. 9)